

도록 2003년 4월 1일 「平成十五年四月一日」로 유통되는 일본의 100엔 동전에 그려진 「시즈오카현 남녀 공동참여추진조례」(비공식번역)



일본국 현법에는 개인의 존중과 법 아래서의 평등이 명문화되어 있으며,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1975년 국제부인의해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, 세계적으로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앨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성차별철폐조약이 체택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.

일본에서도 남녀가 공평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「남녀고용기회균등법」과 남녀가 평등한 입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「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」이 제정되는 등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조금씩 정비되어 왔습니다.

또, 시즈오카현에서도 여성행동계획과 남녀공동참여추진계획을 책정함과 동시에 여성학관을 개관하는 등의 여성정책을 추진하여 남녀가 평등한 입장에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위하여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.

이러한 여러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역할을 정해 버리는 사고방식이나 이에 바탕을 둔 사회관례는 뿌리 깊어, 많은 시민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남녀 모두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질 높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분야에서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뼈 놓을 수 없는 진급과제입니다.

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시즈오카시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남녀공동참여사회 만들기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에서 시행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의 철학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
제 1 장 총칙

(목적)

제 1 조 이 조례는 남녀공동참여추진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,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한편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기본시책을 정하여, 이들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활력있는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(정의)

제 2 조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(1) 남녀공동참여 남녀가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의사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여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이익을 동등하게 받고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.
- (2) 적극적개선조직 앞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에 관한 남녀간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, 필요한 범위내에서 남녀 어느 한쪽에 대해 해당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(3) 세슈얼·하라스먼트(성희롱)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상대의 생활환경을 해치며 성적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이, 대응을 한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- (4) 시민 시내에 거주하거나 통근을 하는 자, 또는 시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
- (5) 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에 상관없이 시내에서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.

(남녀인권존중)

제 3 조 남녀공동참여추진은, 남녀가 사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 받을 것,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성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, 개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확보될 것,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남녀간의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, 성적폭력 등의 모든 폭력이 근절될 것, 그 밖의 남녀 인권이 존중될 것을 취지로 행해져야 한다.

(사회의 제도 또는 관행에 대한 배려)

제 4 조 남녀공동참획추진에 즈음하여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사회제도 또는 관행이, 남녀의 자유로운 활동선택의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.

(무관 [無關])

제 5 조 남녀공동참획추진에 즈음하여 남녀가 대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시, 또는 사업자 기타 단체의 정체 또는 방침의 입안 및 결정에 같이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.

(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 외 사회생활의 양립)

제 6 조 남녀공동참획추진에 즈음하여 남녀상호협력과 사회지원하에서의 자녀교육, 가족개호 그 밖의 가정생활활동에 대해 남녀 모두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니고 그 역할을 원활히 완수함과 동시에 직장생활과 그 밖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(세계적 시야에서의 남녀공동참획)

제 7 조 남녀공동참획추진은 세계 각국에서 추진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고 넓게는 세계를 바라본 시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(남녀 상호간의 성존증과 평생건강에의 배려)

제 8 조 남녀공동참획추진에 즈음하여 남녀가 상호간의 성을 존중하고 임신, 출산 그 밖의 생식과 성에 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존중되고 평생에 걸쳐 심신의 건강이 배려되어야 한다.

(시의 책무)

제 9 조 시는 제 3조부터 앞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남녀공동참획추진에 대한 기본이념(이하 「기본이념」이라 한다)에 준하여 남녀공동참획추진에 관한 시책(적극적개선조치를 포함, 이하 「남녀공동참획시책」이라 한다)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함과 동시에 그 밖의 시책에 있어서도 남녀공동참획의 입장에 서서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.

2 시는 남녀공동참획추진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즈음하여 제정상의 조치 및 실시체계

정비에 힘쓴다.

3 시는 남녀공동참획을 솔선 추진하며 그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 및 사업자와 연대 협력과 동시에 시민 및 사업자의 남녀공동참획추진활동을 지원하도록 힘쓴다.

(시민의 책무)

제 10 조 시민은 성별에 따라 역할분담의식에 고정적인 기준을 둔 사회체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가정, 직장, 학교, 지역 및 그 밖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녀공동참획을 추진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.

2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남녀공동참획추진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.

(사업자의 책무)

제 11 조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사업활동의 남녀공동참획을 추진하고, 취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활동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로환경을 정비하도록 힘써야 한다.

2 사업자는 취로자에게 남녀공동참획추진에 도움이 될 취로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약을 한다.

3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남녀공동참획추진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(성별에 따른 권리침해 금지)

제 12 조 누구든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.

2 누구든 어떠한 장소에서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.

3 부부간을 포함한 모든 남녀 사이에 있어서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, 성적폭력 등 어떠한 폭력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.

(지역에서의 남녀공동참획 실현)

제 13 조 누구나 지역의 단체생활에서 남녀공동참획의 실현을 꾀하도록 힘써야 한다.

(교육의 장에서의 남녀공동참획추진)

제 14 조 누구나 가정교육, 직장교육, 학교교육, 사회교육 그 외 교육의 장에서 남녀공동참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(공공대중에게 표시하는 정보표현에 대한 배려) (공급 [우수공급])

제 15 조 누구든지 공공대중에게 표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, 성별에 따른 고정적 역할
분담, 성회통(섹슈얼 하라스먼트) 및 남녀간의 폭행행위를 조장하는 표현과 그 밖의
남녀공동참획추진을 방해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부록 2 루고[성별] 을공동참획추진[여성]

제 2 장 남녀공동참획추진에 관한 기본시책

(행동계획)

제 16 조 시장은 남녀공동참획추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남녀
공동참획추진을 위한 행동계획(이하 「행동계획」이라 함)을 제정한다.

2 행동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.

- (도보 [은]부로[은]행) (1)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고안해야 할 남녀공동참획추진시책의 대요(대장령)
(2) 앞 호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남녀공동참획추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
사항

3 시장은 행동계획策정에 즈음하여 제 24 조 시즈오카시남녀공동참획심의회에 자문하고
또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(용인 [은]습습 [은]현) (용인 [은]습습 [은]현)

4 시장은, 행동계획을 책정했을 경우 신속히 이를 공표하도록 한다.

5 앞 2 항의 규정은 행동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.

(추진상황의 공표)

제 17 조 시장은 각 연도의 행동계획의 진척상황을 공표하도록 한다.

(조사연구)

제 18 조 시는 남녀공동참획추진시책을 체정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를
하도록 한다.

(정보제공 및 광보활동)

제 19 조 시는 남녀공동참획추진에 대해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를 깊이하기 위하여 모든
정보제공기회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광보활동을 하도록 힘쓴다.

(연구기관 등과의 연대등)

제 20 조 시는 남녀공동참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 연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.

2 시는 남녀공동참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연대 협력하며, 해당 민간단체의 남녀공동참획추진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
(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 밖의 사회생활의 양립지원)

제 21 조 시는 남녀가 함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 밖의 사회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힘쓰도록 한다.

(사업자로부터의 보고)

제 22 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에게 남녀공동참획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함과 동시에 조언을 할 수 있다.

2 시장은 전항의 보고에서 파악한 상황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.

(불만 및 상담에의 대응)

제 23 조 시는 시민 및 사업자로부터의 남녀공동참획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시의 시책에 관한 불만 및 성별에 따른 차별취급 등에 관한 상담에 대해,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[제 3 장 시즈오카시 남녀공동참획 심의회]

(설치)

제 24 조 남녀공동참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즈오카시 남녀공동참획 심의회(이하 「심의회」라 함)를 둔다.

(소장사무)

제 25 조 심의회는 제 16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외에 남녀공동참획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심의한다.

(조직)

제 26 조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남녀 어느 한 쪽의 위원수가 위원총수의 10분의 4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.

(平人)

제 26 조 위원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위원총수의 10분의 4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.

(晉卑)

제 27 조 위원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위원총수의 10분의 4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.

(1)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
(2) 관계단체가 추천하는 자

(3) 시민

(4)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2 시장은 앞항 제 3 호에서 둘고 있는 위원선임에 있어서는 공모방법에 따르도록 노력 한다.

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4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.

(회장 및 부회장)

제 28 조 심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을 둔다.

2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.

3 회장은 심의회의 회의 직무를 통일 관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. 행정체제에 따른

4 회장은 심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5 회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장 불참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(회의)

제 29 조 심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
2 심의회는 위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.

3 심의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모여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
4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(서무)

제 30 조 심의회의 서무는 기획부에서 처리한다.
우수총무부 01 우수총무부

(위임)

제 31 조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회장
이 심의회에 자문하여 정한다.

국무총무부 회장 (1)

제 4 장 잡칙

(위임)

제 32 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발 행 시조오카시 여성정책과

연락처 전화 054-221-1349

FAX 054-221-1295

